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8. 10. 15. (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18년 10월 2일
- 회부일자: 2018년 10월 4일

3. 개정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관련조항을 일부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관련조항 일부 변경
- 관사 운영비에서 냉장고, 세탁기, 텔레비전, 전자레인지 등 기본생활에 필요한 비품을 예산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호 신설(안 55조)
-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 의결에 대한 항 신설(안 제5조의3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도내 관사 거주자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비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

-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, 조례안 제55조 제4호에 신설하는 지원 가능한 기본생활비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지침 등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